

#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.



주거급여콜센터 : 1600-0777

마 이 험 포 텔 : www.myhome.go.kr

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!

## 지원대상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

※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,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

- (추가 요건)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필수)  
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되,  
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\*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
## 신청인

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 관계인, 담당 공무원

※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,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

## 신청장소
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
### [제출서류]

-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신청인의 신분증 지참)  
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
③ 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
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
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
⑥ 통장사본

※ 대리 신청시 위임장,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
## 지원내용

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
※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
※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
※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

※ (기본 예시) 청주 거주 부모(2명) + 성남판교 거주 청년(1명)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면 주거급여가 부모(청주 2인), 청년 (성남 1인)으로 분리지급

가구수	지원상한액(원/월)				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
	1급지 (서울)	2급지 (경기, 인천)	3급지 (광역시/세종)	4급지 (그 외)	
1인	310,000	239,000	190,000	163,000	• 부모가구 급여액
2인	348,000	268,000	212,000	183,000	= 부모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)×부모 가구원수 비율×30%
3인	414,000	320,000	254,000	217,000	• 청년가구 급여액
4인	480,000	371,000	294,000	253,000	= 청년가구 임대료-자기부담분(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)×청년 가구원수 비율×30%)
5인	497,000	383,000	303,000	261,000	
6인	588,000	453,000	359,000	309,000	

## 지급일

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